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13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2022년 12월 31일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유지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변경(안 제7조)

○ 2022년 12월 31일 → 2027년 12월 31일

나. 위원회 구성 시, 성별 비율을 고려하는 내용 추가(안 제10조)

○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→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

다. 국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수시개정을 줄이기 위해 내용 수정(안 제10조)

○ 행정지원국장, 남북 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 →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

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유사한 조항 삭제(안 제17조, 안 제18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2. 10. 20. ~ 11. 9. (20일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

▶ 가족행복지원과의 의견 제출[가족행복지원과-3126(2022.11.08.)호]

#### ☞ 가족행복지원과의 주요의견

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-1(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)과 관련한 의견으로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. 따라서 위 조례개정안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 구성 시,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도모할 것을 제안함.

#### ☞ 행정지원과 의견

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자 가족행복지원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함

원안	수정안
<b>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</b>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<b>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</b>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<b>성별을 고려하여</b> 구성한다.

5)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22. 11. 10.)

- 입법예고시 제출된 부서 의견 반영하여 수정 의결
- 제10조제3항을 현행과 같이 규정하여 수정의결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

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</u>.</p> <p>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행정지원국장,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<u>제1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</u></p>	<p>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-----.</p> <p>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----- ----- <u>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</u>. 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신동빈
연 락 처	02-3153-8205